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1년 3월 22일

회 사 명 : 한국타이어애펀테크놀로지(주)
대 표 이 사 : 이수일 (인)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6 (삼평동)
(전 화) 031-5178-7000
(홈페이지) <http://www.hankooktire.com>

내부회계관리자 : (직 책)경영지원총괄 (성명)박종호
(전 화) 031-5178-7000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인력 에 관한 사항

(1)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 규정'이라 한다)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로서, 이 규정과 이를

차 및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절차를 포함한다.

4. ‘ 감사인’ 이라 함은 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회계법인을 말한다.

제4조(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 변조· 훼손 및 과기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계정보의 식별· 측정· 분류· 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업무처리규정을 따른다.

제5조(회계정보의 식별· 측정· 분류· 기록 및 보고)

① 회계정보에 대한 식별· 측정· 분류· 보고 등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여야 한다.

2.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은 회사의 소유이며, 부채는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어야 한다.

3. 거래나 사건은 회계기간 동안에 실제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4.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 부채, 거래나 사건 혹은 공시되지 않은 항목이 없어야 한다.

5. 재무제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 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한 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6. 회계 거래나 사건은 적절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기록되어야 하며,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회계기간에 배분되어야 한다.

7.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분류, 기술 및 공시되어야 한다.

② 회사의 모든 회계정보는 원본서류 등과 함께 전표(전산시설을 포함)에 기록하여야 한다.

18조에 의한 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제7조(회계기록의 관리· 보존)

- ① 회계장부는 보조원장, 총계정원장 등의 회계보조장부와 재무제표로 구성된다.
- ② 회계장부는 전산운영시스템에 의한 전산장치에 보관하며, 권한 있는 자에 한해 접근 및 수정을 허용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
- ③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 변조· 훼손 및 파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회사는 회계정보의 위조· 변조· 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절차, 접근통제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분장 및 책임)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공시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 회계부서’라 한다) 임직원의 업무를 적절히 분장하고,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 업무분장 및 책임규정’ , ‘ 직무권한규정’ 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9조(대표이사)

- ①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운영을 책임지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 ② 대표이사는 제10조의2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한다.
- ③ 대표이사는 제17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한다. 단,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대표이사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보고 전에 그 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반 사항을 지원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자는 제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한다.

제10조의2(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임면절차)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회계 또는 내부통제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것

2. 상근이사일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는 경우 제2호는 ‘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 로 보아 이를 적용한다.

③ 대표이사는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자를 다시 지정한다.

④ 내부회계관리자의 임면절차는 ‘ 내부회계관리규정 제9조 제2항’ 을 따른다.

제11조(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보고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를 등 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차기 사업연도 교육 계획에 반영한다.

③ 제2항의 평가결과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상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감사위원회 평가결과와 보상정책의 연계)

① 회사는 제18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대표이사 등의 인사· 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24조 제4항에 따른 ‘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 에서 정한다.

제14조(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준거기준)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이하 ‘ 운영위원회’ 라 한다)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라 한다)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한다.

제15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제24조 제4항에 따른 ‘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의 준거기준)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이하 ‘ 모범규준’ 이라 한다)'에 따라 제17조에 따른 점검 및 제18조에 따른 평가를 수행한다.

제17조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기준 및 절차)

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보고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제24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서 정한다.

제18조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기준 및 절차)

① 감사위원회는 제17조 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서(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라 한다)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대면(對面)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對面)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보고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제24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서 정한다.

제19조(평가보고서 비치)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한다.

제20조(평가결과 공시)

①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성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는 ‘ 상벌규정’ 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1. 규정에 위반한 회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2. 회계정보를 위조, 변조, 훼손 및 파기하는 경우
3. 규정에 위반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및 평가· 보고하는 경우
4. 상기 각호를 지시하는 경우

제22조 (규정 위반에 대한 대처방안)

- ① 회사의 대표자 또는 기타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하게 하거나 공시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이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한다.
- ②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한 임직원 또는 회사는 회사의 임직원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위반한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내부신고제도에 신고한다.
 1.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을 지시하거나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2항에 불구하고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경우
- ④ 내부회계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감사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보고 받은 경우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위원회는 보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다.

제23조 (내부신고제도의 운영)

-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한다.
- ② 내부신고제도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신고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와 이사회는 제정 및 개정의 사유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④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 가 ‘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 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 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적용 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및 평가· 보고 준거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 조 및 제16조의 ‘ 개념체계’ 와 ‘ 모범기준’ 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당해 사업연도중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주요 개선내용

개선일자	개선전	개선후	비고(개선이유등)
-	-	-	-

(3) 관리· 운영조직의 책임자 현황

소속기관 또는 부서	책임자 성명	직 책	담당업무		전화번호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기타	
감사(위원회)	조총환 홍성필 정창화	감사위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	-	-

소속기관 또는 부서	책임자 성명	직 책	담당업무		전화번호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기타	
전산운영부서	고명수	팀장	전산시스템책임자	-	031-5178-7155

(4)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소속기관 또는 부서	총 원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비율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평균경력월수*
		내부회계 담당인력수 (A)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수(B)	비율 (B/A×100)	
감사(위원회)	3	3	0	0	324
이사회	5	4	0	0	305
공시담당임원	1	1	0	0	77
내부회계전담부서	4	4	0	0	177
회계처리부서	15	15	0	0	84
전산운영부서	4	4	0	0	246
자금운영부서	12	12	0	0	125

* 내부회계담당인력의
평균경력월수 = $\frac{A \text{의 단순합산 내부회계관리업무경력월수(입사전 포함)}}{\text{내부회계담당인력수(A)}}$

(5)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직책 (직위)	성명	전화 번호	회계담당자 등록여부	경력		교육실적	
				근무 연수	회계관련 경력	당기	누적
내부회계 관리자	박정수	031-5178-7000	예	77	255	5시간	13시간

고서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보고대상	비고
2021-02-25	내부회계관리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점검 결과 1. 점검내용 1) 회계처리방법의 기업회계기준 및 내부회계관리 규정준수 여부 2) 전표, 회계장부, 기타보고서의 정확성 및 보고와 승인절차의 적정성 3) 최종보고서의 기초회계정보반영의 정확성 여부 4) 상급자로부터 규정에 어긋나는 회계처리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2. 점검결과 1) 내부회계규정준수, 기타 예외사항 및 위반사항 없음 2) 중요성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됨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이사회	-
2021-02-25~ 2021-03-30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점검 결과 1. 점검내용 1) 회계처리방법의 기업회계기준 및 내부회계관리 규정준수 여부 2) 전표, 회계장부, 기타보고서의 정확성 및 보고와 승인절차의 적정성 3) 최종보고서의 기초 회계정보 반영의 정확성 여부 4) 상급자로부터 규정에 어긋나는 회계처리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2. 점검결과 1) 내부회계규정준수, 기타 예외사항 및 위반사항 없음 2) 중요성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됨	감사위원회, 이사회, 주주총회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
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보고일자	보고자	보고내용	비고
2021-02-25	감사위원회	연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대한 평가 사항 - 내부회계규정 준수, 기타 예외사항 및 위반 사항 없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됨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감사인명 : 삼일회계법인)

구분	의견내용	회사의 개선여부	개선계획	비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종합의견	2020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사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을 감사하였으며, 2021년 3월 22일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	-
기타 내부회계 제도관련 의견				

2020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